

#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인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18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1. 1.

발의자 : 정인화 · 홍문표 · 진선미  
주승용 · 황주홍 · 윤영일  
최도자 · 이용주 · 김종회  
송기석 · 이동섭 · 박준영  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별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.

이에 별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별금형을 현실화하고,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51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2항 중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1조(별 칙) ① (생 약)</p> <p>② 제5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<u>1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</p>	<p>제51조(별 칙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